

2. 관련 보도의 사실 내용

-- 주간조선 1991. 10. 6일자 (제 1171호) 기사와 관련하여

보 도 내 용(주 간 조 선)	사 실 내 용
<p>1) 정가의 분위기는..... 의아해하는 눈치다.년전부터 파다했으며,... <u>盧의원의 이미지와 실제 모습이 같지 않다는 말도 오래전부터 있어 왔기 때문이다.</u> 당시 정가에 나든 얘기는 <u>盧의원이 理材에 밝아 재산이 상당액에 달하며, 인권변호사로서의 역할도 상당부분 과장...요트타기를 즐겼을 뿐 아니라 노사분규 중재과정에서 「재미」를 보았다.</u> 그외 사생활과 관련된 얘기들도 들렸다.</p>	<p>1) 이 부분의 기사는 신청인에 관한 악의적 소문들을 열거하고 <u>마치 정가에서는 이미 다아는 사실이다</u>는 논조를 유지함으로써 일반 독자로 하여금 근거있는 사실인양 인상을 주고 있다. 동시에 이글이 이러한 소문을 밝히기 위한 것이라는 측면을 부각시켜 <u>대중의 호기심을 유발</u>시키고 있다. 소문과 관련하여 작년 통합 협상 시 그 출처가 정보기관으로 추측되는 소장 통합파 의원들에 대한 악성 루머들은 당시 몇몇 신문사 기자들을 통해 유포되었고 피 신청인인 우종창 기자는 신청인의 고향에 까지 내려가 재산 조사를 했다. 이후 통합실패와 함께 사그라진 소문은 전격적인 야권통합의 성공 이후 유독 피 신청인에게서만 다시 제기된 것이다.</p>
<p>2) 노무현의원의 참모습은 과연 어떤 것인가. 한 국회의원은 이런 말을 했다.....‘약점이 있으면 있는데도, 실수가 있으면 있는데도 국민에게 알려야한다.’... 노의원의 실제 모습이 과장되고 왜곡돼 있다면 이는 정치인의 도덕성 차원에서 문제가 아닐 수 없다.</p>	<p>2) 당연한 이치를 전제해 놓고, 한 국회의원이란 익명을 빌려 노의원이 자신의 약점과 실수를 감추고 이를 국민에게 알리기를 꺼려하고 있으며 <u>도덕적으로도 문제</u>가 있는 인물이라는 식의 결론을 가정해 놓고 있다.</p>

보 도 내 용 (주 간 조 선)	사 실 내 용
<p>3) 법복을 벗은 이유는 관료주의 체질에 대한 회의도 있었지만 실은『돈을 벌기 위해서』였다 본인도 이를 부인하지 않는다.</p>	<p>3) 당시 어려운 집안형편과 조금은 여유있는 생활은 해보고 싶어 돈을 벌기위한 이유도 있기는 하다. 그러나 청문회 이후 여러차례 인터뷰에서 밝혔듯이 본래 변호사를 지망했으나 모친의 권유로 판사를 시작했던 것이며 신청인의 기질상 틀에 박힌 생활보다 여러가지를 자유롭게 해볼 수 있는 활동을 하기위해 개업한 것인지 돈을 벌기 위한 것이 전부는 아니다.</p> <p>또한 형사사건에서 손뗀 것은 상대적으로 형사 사건이 청탁성이 강하고 판검사와의 교제활동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기피한 것일뿐, 돈때문이라면 법조계의 일반적 인식으로 형사사건을 다뤄야 함.</p> <p>돈을 벌기위해 민사사건만을 맡았다는 기사는 등기사무와 관련된 기사내용과 함께마치 <u>신청인</u>이 <u>돈밖에 모르는 변호사였다는 인상을 심어주</u>는 것이며 인권변론 활동의 순수성까지 훼손하려는 자의적 기사이다.</p>

보 도 내 용(주 간 조 선)	사 실 내 용
<p>4) 노의원은 변호인으로서 큰 활약을 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당시 재판에 참여했던 부산의 한 변호사에 따르면 『돈도 되지 않는 사건을 내가 왜 맡아야 하느냐』며 고사했다.</p> <p>『시국사건은 재미도 없고 끝나고 고맙다는 인사가 없다.』고 불평.... 그는 돈이 되지 않는 사건에는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이름만 걸어놓았지 변론에 적극 참여하지 않았다.</p>	<p>4) <u>부림사건은 82년이 아닌 81년 사건이며 변호사가 인용한 부산 미문화원 방화사건도 85년이 아니라 82년이다.</u> 이부분은 전혀 사실이 아니며 부림사건 당시 요청을 받고 흔쾌히 수락하고 열심히 하였다. 이는 부림사건 관계자들이 지금까지 신청인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활동중인 사실이 입증한 것이며 부산미문화원방화사건의 경우 서울의 이돈명, 황인철, 홍성우변호사등 쟁쟁한 분들이 주도하였기 때문에 배우고 관망하는 자세였을 뿐이다.</p> <p>또한 <u>84년부터 본격적으로 노동. 인권변론을 맡아 세화상사, 삼도물산, 동국제강, 동성버스, (주)통일 등의 해고무효확인소송등과 통일노동자 구속사건을 담당했다.</u> 84년 9월부터 변호사사무실에 노동법률상담소를 자비로 설치 운영하며 시국사건변론시 형편이 어려우면 무료로, 수임료를 받더라도 30만원을 넘지 않았으며 이 돈조차 84년 이후 창립된 부산지역인권단체에 지원함으로써 당시 공안기관에서 악명높은 변호사로 지목받던 상황이었다.</p>

보 도 내 용(주 간 조 선)	사 실 내 용
<p>5) 82년 요트동호인 10여명과 함께 부산요트클럽을 결성, 회장에 앉은 그는 아는 사람에게 요트공장을 차려주고 2인승짜리 딩기를 5,6체나 만들었고 8인승짜리 크루저도 한척 건조했다. 동료 변호사들이 총고하면 『재미가 보통이 아니다.』며 회원으로 가입할 것을 권유하고 다녔다는 것이다.</p>	<p>5) 신청인의 취미가 요트조정이며, 그취미도 85년 이후에는 발을 끊게 되었다는 것을 부산의 변호사들은 거의 알고 있다. 신청인이 탓던 요트가 대학교 요트부에서 사용하는 경주용요트로 동호인들과 동호인클럽을 만들었으며 「<u>아는 사람</u>」에게 「<u>요트공장을 차려준것</u>,이 아니라 회원이 차리는 것을 도와주었을 뿐이다. 당시 요트취미를 말린 변호사는 없었으며 초보적인 골프장비를 갖추는 비용보다 싼 요트를 갖고 있었다는 것이 사회적 지탄을 받을 일인지 의문이다. 더구나 8인승 크루저급 요트는 당시 김한준씨가 회원을 모아 만들었고 신청인도 그중 한구좌를 배정해 주겠다는 말이 오고가다가 유야무야되었다. 이는 당시 회원들이 중언해 줄 수 있으며 요트에 대한 일반인들의 사회적 인식을 교묘히 이용해 신청인과 관련된 허위사실을 유포함.</p>
<p>6) 85년 <u>盧의원</u>은 당시로선 고급에 속했던 콘도미니엄 회원권을 구입했다..... 어쩔 수 없이 18평 짜리를 4백 오십만원에 사게 되었다고 말했다.</p>	<p>6) “콘도회원권을 어쩔 수없이 사게 되었다”는 것을 구차한 변명처럼 만들기 위해 ‘당시로선 고급에 속했던’이란 문장을 갖다 부쳤다. 그러나 85년도 콘도미니엄 운영현황을 보더라도 당시 명성사건 이후 투기나 부의 축적수단이 되기는 커녕 실수요자가 없었던 편이며 18평이란 규모는 가장 작고 분양가가 싼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재산이 많다’는 가설을 증명하기 위한 소재로 사용되었다.</p>

보 도 내 용 (주 간 조 선)	사 실 내 용
<p>7) 庫의원 재산과 관련해 눈여겨 볼 부분은 그의 형 庫健平씨(47)의 재산이다. 健平씨는 고향인 진영뿐 아니라 부산 마산 창원 창녕 등지에 논. 밭. 임야. 잡종지. 대지등 가리지 않고 투자했다. 그가 한때 소유했던 부동산은 김해군 한림면 장방리에 산이 10만평, 부산 북구 화암동에 논이 6백여평, 김해군 진영읍에 잡종지가 약 6백여평, 대지가 70여평, 김해군 진영읍 본산리에 논이 2천여평, 경남 창녕에 대지 2백여평, 밭이 약 5백여평, 임야가 90여 평이나 됐고 그밖에 김해군 진영읍 여래리와 경남 창원에도 수백평의 땅을 갖고 있었다. 지번으로 따져 그가 사고 판 부동산 개수는 40여개에 육박했다. 수십억원의 근저당이 설정될 만큼 고가였다. 健平씨의 부인도 한때 수만평의 부동산을 소유.... 부인 명의로 이전한 것도 있다.</p>	<p>7) 설사 신청인의 재산문제 규명하는 것이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넘어 공익에 부합한다고 해도 친인척의 재산까지 조사하여 공표하는 것이 언론의 역할인지 부터 의문이며 더구나 <u>자의적으</u> ‘부동산 투기꾼’이란 판정까지 내리는 것이 정당한 것인지 우선 평가해 봐야 할 것이다. 더구나 신청인의 친형의 재산 형성과정은 신청인 국회에 진출하기 이전이며 “사고 판 부동산 수가 40여개에 육박한다.”는 기사는 한 덩어리에 여러필지가 묶여있는 것을 <u>의도적으로과장</u>하기 위한 표현이 아닐 수 없다. 더구나 ‘부인 이름의 땅’이나 ‘명의 이전’ 또는 ‘수십억의 근저당이 설정될 만큼 고가’의 땅은 <u>전혀 사실무근</u>이다. 이는 명백한 허위 사실 유포로 신청인은 물론 친인척까지도 비방하는 내용이며 이 부분은 법률적 과정을 거쳐서라도 밝혀 낼 것이다</p>

보 도 내 용(주 간 조 선)	사 실 내 용
<p>8) 健平씨는 이른바 부동산 투기로 큰 돈을 벌었다. 땅을 사들이는 과정에 <u>盧의원</u>의 돈이 일부 투자 ... 얼마가 건내겼는지는 확실치 않다. 드러난 것은 85년 2월 健平씨가 평당 5백원 하는 임야 8만평을 구입했을때 88년 김해군 진영읍에 잡종지 1천 5백평을 살 때도 또 국회의원이 되고난 뒤에도 형에게 2억 5천만원을 빌려주고 그 대가로 매달 생활비를 타다 쓰고 있다.</p>	<p>8) 피 신청인들이 의도하는 바는 친형의 부동산 투기에 신청인이 돈을 지원하고 있다는 것을 사실처럼 기사화함으로써 이를 통해 <u>신청인 역시 부도덕한 투기꾼의 일원으로 매도하는 데 목적</u>이 있다. 그러나 85년 2월의 임야 구입은 국회 의원 되기 이전의 일로 이미 변제 받았고 진영읍의 잡종지 문제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 단지 국회의원이 되고 진영읍내 땅 120평 값으로 계산된 돈이 2억 5천만원이며 생활비로 받는 돈은 월 100여만원에 불과하다.</p>
<p>9) <u>盧의원</u>은 13대 총선을 계기로 목돈을 만지게 됐다. 선거를 치르고 약 1억 원의 돈이 남았다. 일부는 서울 여의도 미성아파트 구입자금으로 썼다.</p>	<p>9) “선거 남은돈 6천만원으로 아파트계약을 했다는 것”은 피신청인인 우종창과의 인터뷰에서도 사실이 아님을 밝혔고 용처를 명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왜곡 기사를 게재하였다. 당시 ‘인권단체’가 아닌 변호사와 동기들의 도움으로 선거를 치루고 남은 1억여원은 부산지역 재야단체에 4천만원, 지구당사 보증금 1천여만원, 2천만원씩 2건은 반환하고 아파트 계약금으로 1천만원을 지급했을 뿐임. 그럼에도 불구하고 <u>이 사실을 고의로 누락하여 신청인이 인권단체로 부터 들어온 돈까지 아파트를 사는데 쓴 부도덕한 인간으로 매도하고 있음.</u></p>

보 도 내 용(주 간 조 선)	사 실 내 용
<p>10) 『상당한 재산』과 함께 구설수에 올랐던, 사분규 과정의 『재미』도 약간의 실체가 드러났다. 소문은 劍와 使양쪽에서 돈을 받았다는 이점에 대해 <u>盧의원</u>은 사용자로부터 2천만원을 받은 적이 있다고 시인했다.</p>	<p>10) 1년전 피 신청인과 우종창기자의 집요한 재산 조사가 끝난뒤 그는 조사한 바에 따르면 소문은 사실이 아니며 보도할만한 자료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었다.</p> <p>그때 국회에서 이루어진 로비와 관련하여 이미 다른 잡지와의 인터뷰에서 밝혔던 사용자측의 로비 사례를 들어 신청인 스스로 『돈에 대해선 까다롭고 깨끗하게 처신해 왔다.』는 취지로 들려준 이야기를 마치 노사 양쪽으로 부터 돈을 받아왔으며 ‘약간의 실체’만 드러났을뿐 상당한 ‘재미’를 보았다는 식의 결론을 유도하고 있다.</p>
<p>11) <u>盧의원</u>은 돈에 쪼들리는 구석을 보이지 않고 있다. <u>盧의원</u>을 잘 아는 부산 변호사들은 이 점에 대해 『워낙 理材에 밝 사람이 돼서 제 속은 이미 차려 놓았다.』고 입 모았다.</p>	<p>11) 82년경까지는 부산 남천동의 아파트 1채를 제외하고는 오히려 빚을 지고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입을 모을 사람도 없으며 <u>과연 취재원이 있는지 조차 의심스러운 내용</u>이다.</p> <p>더구나 국회의원이 된 이후 생활비는 지금까지 벌어놓았던 것으로 충당하고 있으며 의원세비는 일부를 활동비로, 나머지는 비서 월급과 사무실 유지비로 지급하고 있고 경비가 소요되는 일체의 지역구 및 정치활동을 포기하고 있음. 그럼에도 현재의 정치활동이 가능한 것은 4명의 등록비서 월급을 조개어 생활하는 10명의 비서와 나오는 것 없는 지역구 의원을 위해 고생하는 지구당원들의 노고 덕택이다.</p>

보 도 내 용 (주 간 조 선)	사 실 내 용
<p>12) 廉의원은 그의 재산과 관련된 소문이 번지자 한번은 후원회 모임에 나가 이런 말을 했다 『제 자신이 과대 포장돼 있다는 사실을 뒤에 알더라도 납득해 주십시오.』</p>	<p>12)비단 재산 문제 뿐만아니라 신청인 자신이 갖고 있는 단점이나 모자란 부분에 대해 후원회 회원들과 일반 국민들이 지나치게 관대하게 보아 주는데 대한 부담감에서 <u>어느 자리에서나 해왔던 얘기일뿐 '소문이 번져 나가서'</u> 또는 특별히 <u>'후원회 모임'</u>에서만 하는것은 아니다. 오히려 왜곡과 과장, 허위로 일관된 이 기사내용은 마치 본인도 인정하는 인상을 주기위한 작위적 인 기사이며 당시 후원회 모임에 우종창 기자는 참석하지도 않았었다.</p>

2) 전장의 보도 (다)와 관련하여

(1) 9월 10일자 同 신문에 실린 기사는 기존의 정치행태상 충분히 예상할 수 있으며, 특히 통합야당에 합류하지 않은 몇몇 정치인들이 『밀약설』을 퍼트리고 있었기 때문에 문제삼지 않을 수도 있으나,

이미 9월 10일자 한겨례신문 2면 『사랑방』란에 『지역구 보장설 발언 파문』제하 기사에 『통합되면 지역구를 절대로 높기지 않겠다』는 신청인의 발언이 게재되었고 수차에 걸쳐 주변인사 및 기자들에게 지역구 고수의 입장을 전달했음에도 불구하고,

(2) 동신문 10월 8일자 『聞外聞』중 “김대표 면피용 연설”제하의 기사 중 『신민계 의원들은 .. 노무현 의원이 탈부산 한다는 설이 계속 증폭되는데 관심을 집중시키면서... 쐐기』의 기사를 게재하고,

동신문 10월 13일자 6면 『聞外聞』중 “구시대 발상... 與 맹비난”제하의 기사 중 『당내에 묵계설이 파다한 가운데.... 노무현 의원이.... 서울전출을 시도할 것이다란 얘기까지 훌러 나오자 이철 중앙정치원장은 ... 난감해 하는 표정들』의 기사를 연속 게재함.

이는 신청인의 반론과 의사를 확인하지도 않고 출처도 불분명한 신민계를 소문의 진원으로 하여 오히려 허위의 사실을 유포시키는 행위이며 이는 동시기 타 언론매체의 보도태도와도 판이하게 다른 행태를 보인 것이며,

특히 10월 13일자 보도의 경우 이철 중앙정치연수원장도 전혀 모르는 사실임을 신청인에게 밝힌바 있음. 이철 연수원장이 취재기자와 만나 그와 같은 대화를 나눈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임의로 위 기사를 공표한 것은 통합야당 내부의 이간을 노리고 근거없는 지역구 이전설을 유포시킴으로써 통합의 대의를 훼손하려는 무책임한 태도가 아닐 수 없음.